

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서남권돔구장 생활체육시설 위·수탁 협약」의 종료로 고척체육센터 운영을 공단에서 직영함에 따라, 돔경기장운영처의 소관규정인 「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」 내에 생활체육시설 조항을 포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생활체육시설의 범위 및 관련 법령 규정
- 나. 생활체육시설 이용자(회원)과 이용 약관 제정의 근거 마련
- 다. 생활체육시설 운영의 기본원칙 규정

3. 의견제출 관련사항

-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신 후 담당자 앞으로 서면(문서, 팩스, 이메일 등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의견제출자 개인성명 또는 단체이름	
주 소	
연락처	
의견내용	
의견제출의 근거	

※ 의견제출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의견제출 시한(도착기준) : **2021년 2월 9일(화) 15:00**

4. 접수부서, 담당자, 연락처 등

○ 접수부서 : 서울시설공단 기획조정실

○ 담당자 : 김 태 환

○ 연락처 : Tel : 02-2290-7135

Fax : 02-2290-6442 *Fax 송부시 반드시 위의 전화번호로 수신 여부 확인 필

E-mail : taehwan@sisul.or.kr

붙임 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. 끝.

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

(제 안 요 지)

1. 개정이유

- 「서남권돔구장 생활체육시설 위·수탁 협약」의 종료로 고척체육센터 운영을 공단에서 직영함에 따라, 돔경기장운영처의 소관규정인 「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」 내에 생활체육시설 조항을 포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생활체육시설의 범위 및 관련 법령 규정
- 나. 생활체육시설 이용자(회원)과 이용 약관 제정의 근거 마련
- 다. 생활체육시설 운영의 기본원칙 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제안근거 : 규정관리규정 제7조(입안) 및 제10조(절차) 등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1)부패영향평가 2) 규정 심사결과
3)사전예고 결과
- 라. 절 차 : 이사장 방침 후 공포·시행
- 마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**【첨 부】 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.
신·구조문 대비표 1부 끝.**

<신 설>

최소 3일 이상의 공지를 하여야 한다.

제24조(시설의 개방 및 이용)

- ① 주무부서장은 생활체육시설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,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평한 이용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다만,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은 월 단위로 이용 접수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월 단위 이용 등록을 하고 이용한 회원에게 등록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.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이용 약관 내에 포함하여 사전에 공지한다.

- ② 주무부서장은 시설의 개·보수, 잔디 보호, 수질 관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의 사용 및 운영시간을 변경·제한 할 수 있다. 다만, 변경·제한의 내용은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